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4. 11 선고 2023가단4781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1.

판 결 선 고 2024. 4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
가. 12,2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2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
나. 2023. 12. 1.부터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3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윤동현

별지